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와삭바삭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중복가입 불가 문구 삭제, MMDA 결산일 변경,
 행명 변경, 카드사명 변경, 수수료면제 종류에 타행 자동이체 추가, 전환 통장명 변경, 조문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와삭바삭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와삭바삭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“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”, “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</u>”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(생략)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은 1인 1계좌로 만 35세 이하의 고객만 가능하며, <u>수수료 면제 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.</u></p> <p>제 4 조 이자지급 ① (생략) 1. 보통예금 및 <u>MMDA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</u> 2. 저축예금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의 제3금요일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(생략) (필수요건) 1) <u>하나SK카드사</u>와 당행 제휴카드상의 체크카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시 2) ~ 3) (생략) 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) 1) ~ 3) (생략) 4) <u>납부자 자동이체</u> 5) (생략) ② (생략)</p> <p>제 6 조 통장전환 만 36세가 되는 첫 영업일에 <u>여우통장</u>으로 전환합니다.</p>	<p>『와삭바삭 통장』 특약</p> <p>제 1 조 적용 범위 “와삭바삭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“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”, “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</u>”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(좌동)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은 1인 1계좌로 만 35세 이하의 고객만 가능합니다.</p> <p>제 4 조 이자지급 ① (좌동) 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 2. 저축예금 및 <u>MMDA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</u></p> <p>② (좌동)</p> <p>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(좌동) (필수요건) 1. <u>하나카드사</u>와 당행 제휴카드상의 체크카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시 2. ~ 3. (좌동) 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) 1. ~ 3. (좌동) 4. <u>납부자 자동이체(타행 자동이체 포함)</u> 5. (좌동) ② (좌동)</p> <p>제 6 조 통장전환 만 36세가 되는 첫 영업일에 <u>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</u>으로 전환합니다.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중복가입 불가 삭제</p> <p>결산일변경 반영</p> <p>카드사명 변경</p> <p>타행자동 이체 포함</p> <p>전환 통장명 변경</p>

<p>은행은 고객에게 자동전환됨을 설명하고 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(통장인자 또는 SMS 또는 이메일)으로 통지합니다. (단, 전환시점에 여우통장 신규중단 시에는 수수료 면제통장 상품 중 하나로 전환해 드립니다.)</p> <p>제 7 조 부가서비스 ① 은행은 이 상품 가입일부터 이 통장 가입자가 하나은행 창구에서 본인의 배낭여행, 어학연수, 유학 관련 자금용으로 외국통화 매매 시에 매매마진율을 70%까지 우대 합니다. ② (생략) 1) (생략) 2) 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여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하나은행 신용대출을 신규하는 경우 연 0.5% 우대이율 제공 ③ (생략)</p> <p>제 8 조 우대서비스의 변경 <u>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변경가능하며,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 (구 하나은행)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.</u></p>	<p>은행은 고객에게 자동전환됨을 설명하고 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(통장인자 또는 SMS 또는 이메일)으로 통지합니다.(단, 전환시점에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신규중단 시에는 수수료 면제통장 상품 중 하나로 전환해 드립니다.)</p> <p>제 7 조 부가서비스 ① 은행은 이 상품 가입일부터 이 통장 가입자가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본인의 배낭여행, 어학연수, 유학 관련 자금용으로 외국통화 매매 시에 매매마진율을 70%까지 우대 합니다. ② (좌 등) 1. (좌 등) 2. 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여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KEB하나은행 신용대출을 신규하는 경우 연 0.5% 우대이율 제공 ③ (좌 등)</p> <p><u>(삭제)</u></p>	<p>전환 통장명 변경</p> <p>행명 변경</p> <p>행명 변경</p> <p>조문 삭제 (내용 중복)</p>
--	--	---